

<둘째마당 : 학생인권기준 이해하기 발표 내용>

■ 편지 2 : 체벌과 상벌점제

모든 행동이 똑같은 점수로 평가될 수 있는 건가? 뺨 뜬서 벌점 받은 학생과 지각한 학생을 어떻게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나

벌점제는 하나의 인간을 몇 점 짜리 벌점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하는 작업. 체벌보다는 더 야만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인권적인 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 덜 야만적인 것 아닌가.

잘못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 한다는 전제도 문제. 무엇을 잘못으로 보는가의 문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 행동의 원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행위 결과만 보고 평가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

당장 체벌의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 구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다 보니 벌점제처럼 찝찝한 대안들이 자꾸만 나온다.

실수와 고의는 구분해야 하고. 실수할 권리가 있다면 행위의 원인을 살피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현재 학교 시스템은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를 방해하는 모든 행동을 금지하는 것. 이럴 때는 체벌의 완벽한 대안은 결코 출현할 수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논의는, 본인들이 속해있는 공간 안에서 무엇을 문제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함께 정하는 것 아닐까. 학교마다, 교실마다 학생들 내부의 권력 구조가 존재. 작은 소집단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 체벌의 대안을 고민하는 교사들, 상벌점제를 대안으로 고민하는 교사들의 이면의 욕구는 무엇인가. 체벌의 기준과 벌점의 기준은 동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벌점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 기준은 문제삼지 않고 체벌보다는 덜 야만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 아닐까.

또 하나,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강자의 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좋은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규칙과 규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휴먼 네이처>라는 영화를 보면, 이른바 행동수정이론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

=> 상벌점제는 사탕발림. 푸른교실처럼 벌점 많이 쌓인 학생을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교실을 보면 체벌과 다름 없다. 상벌점제가 왜 체벌로 결국 이어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 학생인권조례 통과되면, 바로 현장에서 막막해하는 교사들이 있다. 대안에 대한 욕구들이 많다. 상벌점제가 대안이 아니라면 무엇을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할지...

=> 학생 수를 줄이는 등 구조가 바뀌어야.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구조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할 수 있을 것.

■ 편지 1 : 두발규정

두발 문제를 구성원간 협의만 거치면 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힘들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두발규제를 하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두발 자유도 권리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므로 인권 기준과 조례 내용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 두발 자유가 인권이라는 것은 양보할 수도 없는, 유예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의미. 협의 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해봐도 노사정위원회, 삼부회의랑 거의 다름 없다. 두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테이블이다. 권고 차원이 아니라 확실한 강제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 편지 3 : 반성문

어떠한 형식의 반성문이든 간에, 두려움에 기초하여 강요된 반성문은 인권 침해일 수밖에 없다. 반성문 전에 진술서를 쓰는 학교가 있는데, 진술서 역시 사실 진술에 그치지 않고 반성을 강요하는 근거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반성문을 작성하기 전에 강요, 압력, 위협적인 분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행동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교육이나 상담을 통한 접근이 바람직.

학생들이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 인격이 무너질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양심'을 설명. 반성은 내적 성찰의 과정. 그걸 외부로 드러낼 때 반성을 넘어선 '벌'의 과정이 시작. 일기장을 누군가가 볼 때 일기장도 나만의 기록 장이 되지 않게 됨.

■ 편지 4 : 휴대전화

휴대전화 주제는 매우 논란이 분분.

원래 기능은 통신. 그런데 학부모의 학생 소재 파악이 주요 목적으로 사용.

휴대전화 짐작이 생기다 보면 수업 집중에 방해.

공중장소에서 쓰는 것과 교실에서 쓰는 거에서 공통점은 울릴 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학교에서만 금지된다. 극장에서 가져오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지 않느냐. 혐오함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도 아닌데 왜 소지 자체를 금지하나.

등교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수업에 방해된다는 주장 있으나 과연 그럴까. 이 자리에서도 휴대전화 울렸지만 흐름이 방해되지는 않았다. 수업에 방해되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은 휴대전화 소리가 울렸기 때문. 학교 전화로 걸라고 하더라도 급한 통화라면 똑같이 수업이 방해되는 것 아닌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올 수 있다 없음을 정하는 것은 문제. 학생 개인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 소지 금지와 압수 문제를 구분해서 논의. 휴대전화 쟁점에서 중요한 쟁점은... 학생은 공부만 해야 하나, 50분 내내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하는가의 문제.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 문제로 보기도 하는데...

■ 편지 5 : 학생회 권한

지금 학생회는 축제용, 체육대회용 학생회. 학교 안에서 권력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주체적인 학생회 운영에 대해 학교도, 학생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회 무용론도 존재.

지도교사는 “너가 책임질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고, 학생회 간부들도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 주체가 나타날 때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은 지속적인 유예의 반복.

어떻게 깨야 할까. 지도교사라는 말 자체에 포스, 위치가 숨어 있다. 지도교사 이름을 자문교사로 변경해야.

학생회가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학생회 부회장을 해봤는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뭘 해봐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더라. 현재 교육제도 안에서 학생회를 통해 학교를 바꾼다는 건 어려운 상황. 학생인권옹호관뿐 아니라 자치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 학생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학생회를 자치기구로 볼지, 훈련의 장으로 볼 것인지 논의 필요. 학생회를 자치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공간이라는 얘기에만 머물 때, 자치권을 진정 확보하는 논의로는 넘어가기 힘들다. 학생회가 자문교사 임명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셋째마당 : 학생인권조례 반론에 대한 대항논리 개발하기 발표 내용>

- 반교권론

: 기록 못함;;;;;

: 교권을 학생에 대한 지도 통제권이라고만 좁혀서 해석한다. 사실 교권의 핵심은 교육의 자유. 국가나 관리자로부터의 자유. 교권 가운데 학생 지도 통제권으로 좁혀서 이해한다고 했을 때, 학생지도 통제권은 교사의 권리 맞나? 그 쟁점은 남는다. 며칠 전에, 학생 지도 통제권이 교사의 권리가 아닌 의무였음을 확인하는 사건이 평택에 있었다. 교장이 교사가 학생 지도 잘 안한다고, 자기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했다고 교사를 패는 사건 발생;

: 나오는 쟁점 중에 학생은 배우는 지위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 이걸 배우는 과정에 대한 오해다. 지식의 전수 받는 과정이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깨닫고 스스로 알게되는 과정이지 일방적 지식 전달 과정은 아니다.

=> 배우는 과정과 인권의 제한과정이 연결이 안된다. 그것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보라고 했을 때, 미성숙론이나 부족하다는 이야기 나온다. 그럼 그것에 대한 논리를 반박하면 될 것 같다. 학생은 미성숙하다는 전제를 짚어줘야 될 것 같다. 학교를 특별한 공간으로 해서 인권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할 때, 권리를 제한할 수 밖에 없는 공간으로 만드는 순환 구조를 깨야함.

: 학생인권조례 추진 자체가 교사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교사를 가해자로 본다는 논리에 대한 것은? 교사와의 신뢰를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 학교야 말로 권력관계가 통하는 공간 아닌가. 강자가 자의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학교라는 공간을 자의성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닌 정당한 기준이 통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 착해서 걱정하는 사람과 뒤에서 음흉한 속셈을 포장하는 사람들에게 던질 수 있는 말 어떻게 다를까? 가려서 이야기 해야 한다.

- 학습 분위기 저해론

: 현직 학생의 입장이다.

: 이런 이야기를 하는 원인이 뭘까. 학습 분위기, 통제 운운하는 이유 뭘까. 그 분들이 말하는 학습 분위기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개념이 다르다. 수업시간 핸드폰 올리면, 학습 분위기 침해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 자체가 누군가 교육을 할 때, 엄청나게 거대한 침묵 속에 있고, 그 침묵 속에 교사의 목소리만 울리는 것을 전제한다. 학습의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생각 안한다. 쉽게 통제하려는 욕망이 숨어있는 것 같다. 핸드폰 벨이 울려도, 학생들이 별로 신경쓰지 않으면 되는 거다. 침해된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말하고 행위에 관한 토론을 민주적으로 도출하면 되는 거다. 조용한 상태로 쉽게 통제하고 싶다는 욕심 욕망이 숨어 있는 것 같다.

: 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교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나. 학생 간 소통도 가능한 거다.

: 학생- 교사 서로 엄청나게 불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로를 믿지 않는다. 지하철에서 알몸으로 뛰어 들어오면 누군가가 제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것은 공공성에 위배되니까 잘 안할 거라고 믿는다. 학생들 같은 경우도 갑자기 옷을 벗고 하는 일 잘하지 않는다. 근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예측 불가능한 일을 할 것이라는 불신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

: 해결책을 원하면, 19살에서 스무살로 넘어가면 그 찰라의 순간에 엄청난 권한의 폭주가 있다. 자기가 한 행동, 자기가 책임질 권한을 한 순간에 주어진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권한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두려워하나?

: 만약 만약 만약에 학생인권 보장해서 교권 침해당한다고 쳐도, 그건 이기적인 거다. 자기네 침해된다고, 학생인권 통과 못되라고 하는 건가?

(토론)

: 교육과정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거 맞다. 그런데 보호자로서의 역할, 통제자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경우 발생한다. 운동하다 다칠 경우 등등. 사고가 발생한다. 그 부분에서 이제부터는 점심시간에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생 안전 문제가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이상 못하게 하는 일 자주 발생한다. 그럼 어디까지가 교사의 역할이고, 어디부터는 학생인권으로 보장할 부분인가?

=> 어떻게 교사가 책임지게 되나?

=> 큰 사고면 교사 개인이 물어주게 되기도 한다.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없다.

부모로부터 안전을 위임받았다고 법적 해석. 교문 앞까지 갈 때 까지 안전에 대한 책임은 교사 개인에게 있다. 그래서 교사들이 예민해 하는 것.

=> 근데, 그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때에는 의도치 않았던 가해자든 교사든, 이건 사고 였고 이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서로 간의 위로나 공감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는 공포가 굉장히 크고, 다쳤는데도 누군가에게 혼날 거라는 공포가 있다. 교사도 공포가 있고. 셋다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다. 학교 안에서 짓눌리는 공포감에 대해 대놓고 말하는 것이 무책임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에 발생했을 때 각자의 위치에서 느끼는 공포감을 서로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묻든지 해야함. 내가 상처 받지 않게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공포나 불안에 대해 그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공감해 나가야 한다.

=> 지금 말한 것처럼, 인권 조례 통과 되고 사고 늘지 않았냐, 라는 반응있을 때...

=> 요즘 학교 안 폭력 사건 많아서 교사도 명찰 달고 다니게 한다. 내가 싫다고 하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한다. 근데 나도 대안이 뚜렷지 않은데, 그럼 내가 느끼는 위축감이나 불만을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건가? 이런 문제제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장난치다 손가락이 잘린 일이 있었다. 학부모와 할머니가 쫓아서 따귀 때리며 왜 칼을 만지게 했냐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반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더라. 선생님 잘못 아닌 거 안다, 라는 마음 전하면서 문제가 조금 수습이 됐다.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다.

=> 아이가 수업실에 화장실 갔다가 넘어진 사건 있었는데, 그 사건 계기로 수업 시간 화장실 출입이 금지된 학교도 있었다. 학생 안전을 위해 교사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한다는 이 논리 구조 속에서 교사에게 의무로 강제된다. 복도의 문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모든 걸 풀어버리는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조례를 통해서 이제야 구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게 되었다, 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다. 교사가 떠드는 아이를 제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원래 다같이 떠드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학생도, 교사도 부당한 책임에서 벗어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 학교의 주체를 말할 때, 학생 학부모 교사로 말하는데, 학부모가 왜 들어가는 걸까?

=> 조례안 작성 내부 쟁점 토론에서 보호자의 위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서 이야기를 나눠 보기로 한다.

- 집회 시위/홍위병 론

:조중동에서도 많이 나옴. 기본적으로 미성숙론, 보호주위와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럴 수 있다. 아이들이 정치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관료주의 문제도 많고, 억압적인 교장과의 관계가 있고, 교사들도 오늘만 참고 살자라는 분위기로 생활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조건에 대해 싸울 때, 인정을 못한다. 자신도 쪽팔리는 게 있는 거고, 열등감에 빠진다. 조례의 역할이 원래 학생들에게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 거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 없던 자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개념 정의의 문제도 있다. 국회의원들만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풀보수

가 보기에 시민 단체 싫어하는 것처럼. 대의 민주주의만, 형식적 민주주의만 인정한다.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 학생들도 똑같이 대한다. 학급회의-학생회 통로 있는데, 왜 정치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다. 교사 스스로도 정치를 맡겨놓고 있으니... 생활의 정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튀는 학생 하나의 문제로 여긴다. 교장하고 말 한마디 하는데, 나는 석달 걸렸다. 담임 거치고, 주임 거치고 등등등. 교장에게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문제다. 모든 사소한 것들이 정치적인 것인데.

(토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도 교장에 대한 면담권 같은 것 규정하고 있다. 현실의 맥락을 바로잡으려 넣어 놓은 것.

:생활의 정치 뿐만 아니라, 청계 광장에서 집회를 했을 때, 집시법도 해당하는 거고.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행사하는 것 자체도 정치다. 학교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이 자리를 내어 주기 싫은 이면의 욕구가 분명 있다.

: 약자들의 권리 요구는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될 수 밖에 없다.

: 교사들도 정치적 권리가 억압되어 있다. 교사가 학생들을 부채질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의 정치적 권리 확보는 교사의 정치적 권리 확보와도 연결된다.

: 배후론- 좌빨 교육감, 홍위병 등 모욕적 주장이다. 인권영화제 영화 중에 남미의 좌파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 였는데, 거기서 한 시민이 말하는 것이 그가 잘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선택했고, 그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우리가, 라는 말 했었다.

- 상위법 위반

: 상위법은 초중등교육법을 말하는데 그 안에도 인권보장 의무조항이 있다. 상위법 대 상위법의 비교 가능

: 국제 인권조약, 유엔아동권리협약도 효력이 있는 법이다.

:헌법이 짱이다.

: 법의 정당성은 인권을 기준으로 따질 수 있다. 인권을 보장하는 한에서 의미있다.

: 법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토론)

: 더 높은 상위법도 있다. 초중등교육법 안에 학생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시행령 안에서 차별 허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 든 것 자체가 모순이다.

: 교육부에 차별 금지해야한다고 말할 때 대답이 교육상 불가피한 순간이 아니면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부도 차별 금지 취지로 이 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 그럼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 문제;;

헌법은 추상적이고 넓게 권리를 보장하고, 그 밑의 하위 법률이 인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다. 학생인권조례가 법률보다 그것을 초과해서 가져가는 것 문제 아니냐? 라는 논란 계속 있다. 한 헌법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 테두리 안에서만 법을 만드는 것은 중복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해석을 위해 법을,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을 쓰는 것은 조례가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인권 보장보다 좁게 인권을 담아낼 때... 이런 것이 상위법 위배다.

- 요즘 애들 론

: 요즘 애들이 어찌고, 저찌고... 버릇도 없고... 그 요즘 애들은 폭력성, 주위력 결핍, 게임 중독 등을 말하는 거다. 그게 사실 사회에서 청소년들만 그런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어른들도 맹목적인 경우 많다. 박근혜 중독증;;; 선생님들도 우리 공부시키는데 중독되어 있다.

주위력 결핍, 비행은 다른 맥락. 50분 동안 가만히 있는 것 원래 쉽지 않다. 애들은 모두 병에 걸렸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 그렇게 치면, 당연히 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이다. 병이라고 본다면, 문제라고 본다면, 이걸 치료해야 하고 행동 수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 짓는다. 권리는 안주고, 너를 구해줄게 라고 하는 것. 대화는 평등한 관계에서 시작해야 한다.

근본적 해결은 청소년에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공간이나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

(토론)

: 요즘 애들, 니들이 뭘 알아- 고대 동굴에서도 있던 말. 그 세대가 해야하는 일을 이전 세대가 미리 정해 놓는 것. 어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정해 놓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는 것.

: 49쪽, 교총 교권국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휴대전화, 음악 들으며 수업 방해.. 어차피 의무교육인데 못자르잖아요? 하는 학생... 학우를 괴롭히는 학생...” 이런 말 있다. 이 중에서 휴대전화, 음악을 자기 혼자 이어폰을 들으며 했으면 수업 방해가 될까? 교칙 위반했을 때, 뭘 위반한 걸까? 궁금하다. 근데 누구도 이를 궁금해 여기지 않는다. 의무교육이니까 자를 수 없잖아요, 이것도, 자신이 가진 알량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거다.

: 무서운 10대론에서 짚어봤던 것처럼, 10대 전체를 위협한 집단-불안한 집단으로 몰고 갔을 때, 교사들의 권리 올라가지 않는다. 이것이 부각될수록 교사의 무능이 부각된다. 교육이 이지경이 된 이유는 교사들이 자유, 권리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연결된다. 그러다 보면,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된다. 악순환. 결국 학생인권조례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 화살은 여기에 가있는 거다. 그래서 학생만이 학생인권조례와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라는 것.

: 학생 간 폭력 문제, 여교사 희롱 사건, 학생의 교사 폭력 사건 등은 관점 정립 필요하다.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말해야지, 그냥 교권 붕괴라고 봐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폭력 사건의 이면을 보면, 그 희생양을 뽑아내는 방식 아주 권력적이다. 신규 여교사 공격하는 이유... 그 여교사가 자신이 학생에게 맞았다는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 교사도 중독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 중요한 것 같다. 인권이 유예되어 있는 학교 안에서 그렇게 교육 받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것을 못보는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다. 최근 장애인들이 탈시설 운동하는데, 얼마 전에 시설장들도 이 변화의 흐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다보면 무력해지는 것, 항거하지 않는 상태에 빠지는 것 시설 증후군이라고 말하는데, 장애인만 시설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인 자신도 시설 증후군에 빠진 것 같다. 나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줄 몰랐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 교장들이 교육청 연수에서 집단 퇴장 하는 것,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당혹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의 대안 논리 만들어 봤다.

<넷째 마당> 조례안 작성 과정에서의 내부 쟁점 검토

조례안 작성팀에서는 경기도 조례안을 바탕으로 서울에 맞게

큰 원칙은 경기도 조례안을 보니 제한되는게 있어서 두발이나 복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면서 후반부에 길이는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길이만 제한할 수 없나 논란이 있어서 큰 원칙은 권리제한항목삭제, 헌법에도 있는 권리인데 구체화하기로 함

1장 총칙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었으냐면 현재 교육청 가독하에 있는 유치원생들의 인권도 포함, 학생은 아닌 청○소년과 아동으로 분류되는 영유아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교육청을 대상으로 안응르 내므로 그 안에 포함되는 사람드를 포함

2조의 정의는 내부적으로 완성이 안되서 가나다순으로 정리

3조에서 경기도 학생조례는 학생인권의 제한을 교육목적의 필요상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

2장 차별에서 나이, 신분, 출신지역 등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적 지위 포함

2절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에서 경기도 조례는 물리적 체벌은 금지된다고 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과 체벌을 nsfl해서 학교폭력이 학생간의 폭력으로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노력해야한다는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방지해야한다. 협력해야한다고 수정

9조 학습에 관한 권리에서 경기도조례는 법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침해받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로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수정

11조 휴식에서 휴게공간과 확보할 방안을 추가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된다고해서 마치 길이만 규제해서는 안되는거 같아서 삭제했는데 아마 경기도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두발이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문힐 우려를 가지고 그런거 같은데 서울의 경우는 별다른 언급 없이 그냥 넣었다. 나중에 토론하면 좋을 듯

사생활의 자유 부분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의 권리를 교육목적상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목적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이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 정리

학생들의 의견 중에서 학생연애 등 교우관계를 침해하는 것도 인권침해라는 취지에서 한가지 추가

13, 14 사생활, 비밀보장을 하나로 합쳤다.

14조에서는 정보공개에서 학생의 권리만을 얘기했는데 학교의 공개의무도 추가

15조 양심종교의 자유에서 경기도는 사상의 자유가 들어가나 마냐의 논의였는데 사상의 자유로 논란을 하기 보다는 양심의 자유를 풀어서 설명하는게 좋아 세계관, 인생관, 윤리적 판단으로 구체화

종교자유와 관련해서 다음 각호에 대해 침해되서는 안된다고 함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안할 수 없어 대체과목 의무화

의사표현의 자유에서는 경기도 안보다 구체화, 학생들이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 이 부분이 조례탐안에서는 합의를 봤으나 이 안을 가지고 주민발의를 받을 예정인데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경기도 학생조례에서는 자치활동 간단한테 학생회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학생회 권리를 잘 몰라 학생자치, 학생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는다고 자세히 넣었다.

학칙 등 제개정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 발의권도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권리가 아닌거 같아 발의권을 넣었다.

학생전체의견을 수렴해서 고치도록 되어 있는데 수렴방식을 구체적으로 전체학생의 의견을 거치도록 함

20조에서도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결정할 때라는 부분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삭제

뒷부분 복지관련해서는 그대로 유지

징계절차에 대해서 내용은 같고, 경기도 안에는 없던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권리를 지킬 권리 상담 및 조사 등으로 두 개로 나누어 준비

주로 관심있는 부분이 학생의 권리부분이라 2조까지의 학생인권관련 부분을 설명드렸고, 영

유아를 어떻게 포함할지에 대한 고민, 조항별로 포함되는 부분과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은 하는데 쉽게 답을 못찾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1. 두발제한에 대한 문제, 두발, 용모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 포괄적인거 같고 두발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상임위때도 파마나 염색도 자유롭게 하자는데 아니다. 이걸 학교차원에서 자유롭게 얘기하면 되고 조례는 두발 길이만을 제한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다. 두발이라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학생인권하면 두발자유가 제일 큰 이슈이다. 두발의 문제가 두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두발 길이라고 규정하면 3cm 5cm로 명문화하면 논의를 협소하게 만들어버릴 우려가 있다.

-우려되는 건 우리가 길이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상임위로 가면 이것이 쟁점화하게 될 것이다.

-학교나 이런데서는 도대체 이 말의 저의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 길이를 얘기하면 길이를 왜 굳이 얘기했을까 하면서 파마는 안된다는게 숨어있어 이라고 한정지을 수 있어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얘기를 꺼낼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두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파마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그런 것처럼 두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한다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길이를 넣으면 한정적이고 그들이 먼저 쳐서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막힐 것 같다.

+ 2항이 삭제가 되면서 1항에 묻히지 않을까가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가도 학생들이 관심있는 부분이라 이슈화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

-저는 고민이 되는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만들 때 길이 규제를 넣은 건 현실조건을 많이 고려한게 있다. 두발자유라는 권리의 의미는 길이자유에 제한해서 해석할 우려가 있지만 두발의 전면자유를 상상하기 힘든 조건이라는 게 있어서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해도 길이자유를 정하는게 최대치가 아닌가 싶다. 두발길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강제적인 규정을 만드는 현실의 힘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큰 방향에서 근본적 문제제기는 동의하지만 현실에서는 빠른 변화를 재촉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간과되서는 안된다는 고민이 있다.

-권리를 가진다 와 해석은 안된다는 건 다르니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가지며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포괄적으로 가면...

+ 그게 12조 2항이죠

-구체화 시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규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염색 파마를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를 학교 안에서는 발견한다. 다수의 학생들도 파마 염색은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길이를 완화하거나 자유화하는 이 선에서 최대치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 그래서 오히려 두발길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두발길이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을 이야기한다는 의미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홍보영상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시작점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이 조항을 방어적으로 쓰는 느낌이다. 우리는 길이만 얘기한거고 다 철폐하라고 한 거 아니니 염려하지 마시고요라는 느낌이어서 만들때랑은 다르게 유보조항 같은 느낌이어서 염려가 된다.

+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칙으로 가야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집회결사의 자유와도 같은 맥락을 갖는다. 두 번째 주제로 옮겨가서 얘기를 풀어가겠다.

2. 16조 학생은 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사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 학생은 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있는데 ‘평화로운’ ‘수업시간 외’ 등이 매우 자의적인 해석의 우려가 있다.

-조례안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데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인지 학생인권이라는 상징성을 갖는것인지 애매하다. 헌법에 보장되어있다는 것을 내세웠다는 자문위 참가자의 말도 있는데, 서울 조례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꺼내면서 주민발의안에서 의사충돌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하는 부분이고, 나가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에서 그게 빠진걸 보면서 참 억울하다는 생각, 서울조례가 경기도 학생 조례 후 나오는 것인만큼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가야한다. 주민발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가장 큰 고민이 이것이다. 언론이나 이런데도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하나로 여론이 형성되고 큰 이슈로 부각이 될 것이라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득할지 막막함이 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할지 고민이다.

-한편에서는 조례가 이 부분이 수정되면 통과되기 쉽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이걸 넣으면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여론전을 통과할 때 불리한 것을 하나둘 빼면 남게되는 건 양상한 것뿐 어려운 것들은 원칙으로 돌파해야할 것 같다.

-원칙을 지키는 건 중요한데 문제가 있으니까 빠자는게 아니라 화두가 되는 집회시위를 어떻게 돌파해갈지가 중요하다

-반론이 나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서명을 받으면서 설명하는게 중요하다

-주민보다 언론과의 마찰이 우려다

+ 언론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실제 주민과의 전쟁이 될 것 같다. 체벌금지에 교사들이 많이 반대했다. 체벌금지가 들어있는 조례안으로 서명을 받으려할 때 동의할까 의문이 든다.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부분에 대한 감이 떨어진다. 조직팀에서 판단하는 것들을 듣고 싶고 여기 모이신 분들이 소속된 단체 주변분들을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지지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웬지 모르게 꼬투리잡고 싶을 때,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 이런데서 학교는 빠져있다. 역으로 학교 안, 밖에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더 제한을 두는데 그 이유는 밖에서 시위를 하면 주변 안전에 위해를 할 염려가 생기는데 학교 안에서, 밖에서 집회시위의 금지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학교는 제외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학생들 시위참여시 전경한테 맞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집회하는게 안전하다 라는걸 부각시켜서, 조례안에 안들어가도 나갈 때 나가는데 학교 내에서 시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득할 수 있다.

-학교 내 집회 장면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거 같다. 학내집회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더 처량해지기도 하는데 감쪽발랄한 집회장면을 보여주는게 심정적 거부감을 없애주

는거 같다. 교사랑 학생이 같이 하는 사례들을 보여주기 등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건 위력적인 집회 아닌가요? 학교 내 억압적인 권력을 뒤흔들라고 하는건데 그런걸 볼 수 없어서 안타까운게 아닐까? 학교내에서 하는건 학교문제를 가지고 하잖아요. 학교내에서 집회를 했을 때 두려움을 갖게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입장의 차이를 살펴야

-경기도의 경우 학생들의 참여가 있지만 위에서 강력하게 추진된 면도 있다. 서울의 경우 왜 주민발의를 택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래로부터 움직임을 만들때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주민발의할 때도 발의의 주체로 학생들이 안되서 참 굴욕적이긴 하지만 아래로부터 추진할 수 있는 것. 이들이 집회시위를 놓는다는 건 이중의 굴욕이라 이 조항을 빼지 않는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다.

-청소년은 주민발의를 못하는대신 청원서명을 한다.

+조례안 팀에서 결정된 대로 자세하게 의사표현의 방법을 넣는 안으로 결정하라고 한다.

세 번째 교육의 주체를 어떻게 둘 것인가? 교사, 학생, 학부모(보호자)인데 학생을 대변해서 부모가 이야기해줘야 할때도 있는데, 학교와 학부모가 결정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염려가 되는데 보호자의 위치를 어떻게 뒤야할까? 경기도 조례안을 보면 보호자의 위치를 아주 최소한으로 두고 있다. 서울 조례팀의 경우 종교의 자유를 동의할 때 부모가 종교의 자유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넣자라는 안이 있었다. 학생인권조례를 대부분 중고등학생에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의 의도대로 갈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자라고 하는데 이들을 다 포괄하자고 하니까 의문이 든다.

-학생인권의 위탁하거나 양보하는건 맞지 않는거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보호자에게 위임한다기보다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 같다.

-초등학생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설명할 수 있게

-학생수준과 이해에 맞게 알려주는걸 의무조항으로 넣는게 필요. 이 조례가 어떤 식으로 학교 현장에서 알려지고 교육되고 활용되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논의 중 나온 이야기는 징계과정에서 이를 학부모가 몰라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이야기가 나왔다.

-징계과정에서 억울한 것을 옹호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나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게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학생들이 개인의 학습을 선택할 권리가 우선되어야하고 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안좋았던 것들을 보완해야지 두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

-학교를 3주체로 했을 때 학부모가 학생의 대리자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지? 야자를 할지말지를 학부모한테 물어봐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이건 왜곡된 권리인거 같다. 학부모 학생 학교가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학생의 대리격으로 참여하는건 시정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 학부모가 참여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갈 것인가 등 함께 의견을 모으는데 삼주체가 필요. 권한을 가진 운영주체를 본다는 학부모도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에서 이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학부모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보호자로서의 학부모의 권한에 대한 문제, 교육의 삼주체

로서 학생, 학부모, 학교가 있는데 좀 다른 문제인거 같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교사나 학교가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정리하고 학교 삼주체로서의 학부모의 역할을 설명해주셨는데 더 보충해주시거나 학부모가 학교주체로서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셨는데 우려하는 점을 이야기해달라

+ 학생의 교육이라는 부분이 학교와 가정이라는 부분이 같이 가므로 같이 고민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같이 나선거 같다.

-지금 학교상황의 현실에서 지금 학부모의 위치는 무엇인가요? 그것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겠다.

-지금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를 참여시키고 있다. 참학의 경우 학생까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요청하지만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 학생대신 학부모를 대리인으로 끼워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오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체벌금지와 관련해서 무체제기가 됐을 때 교사 80% 학부모 70가 체벌을 찬성하는 것을 보면서 납득은 가지만 교육의 삼주체 안에는 학생과 동등한 학부모가 내 자녀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전체를 고려하는 주체로. 학생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학부모의 탓이라고 하실까봐 우려가 된다.

-학부모인가? 보호자나 후견인까지 포괄하는 것인가요?

+ 학교교육의 주체로서의 학부모라고 하면 의미가 혼돈되어 있다.

-학부모조직과 운동이 있었던 것이고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학부모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부모와 살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나면서 보호자라는 개념으로 법적 개념이 조정된 것인데 여전히 학부모라는 말이 익숙한 것이다.

-보호자라고 하는, 학부모라고 하는 보호자들을 교육의 주체로서 인정을 해야되는것이지? 학생을 매개로 해서 학교에 참여한다는 생각이 든다.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더야하는건가? 가정에서도 교육을 하다보니 그런건가? 어떤 이유로 학부모가 주체인 것인지요?

-학부모를 주체로 생각하되 대리인의 지위는 빼고, 개별적인 주체로서 학생과 동등한 것을 가지면서 동등하기 때문에 학생을 넘어서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는 대리인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보다 앞서 결정하는 상황이긴 하다. 똑같은 주체로 설정하되 대리인의 명분을 빼서 학생을 넘어서지 않도록 제안하고 싶다.

+ 학생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건 공감할 것이다.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학부모와 교육의 삼주체로서의 학부모는 다른 것 같다.

두발과 집회시위 자유의 제한은 최소화하고 조례팀의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